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해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산출기초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이율 및 위험률 등

제2-1조의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부표2-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방광암 제외)"에 해당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 1. 분류코드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 2. 분류코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 3. 제2-1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 내암
 - 4. 제2-1조의5("비침습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비침습방 광암
 - 5.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 중 분류코드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 중 분류코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 다.
-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 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다만,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

- 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암

악성신생물(암)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방광암을 제외한 암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을 기준으로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여부 및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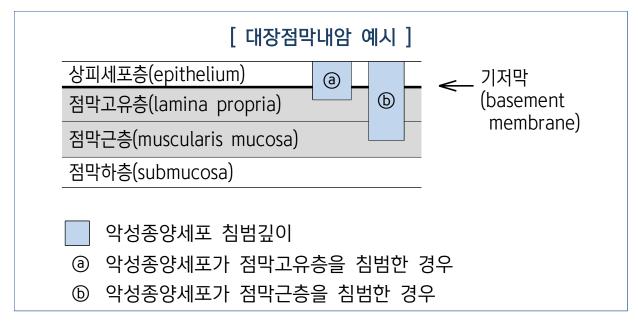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 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진단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으로 진단확 정된 것으로 봅니다.
- ·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 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으로 진단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1조의4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의 악성신생물(암)(C18 ~ 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 ②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읍 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1조의5 "비침습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비침습방광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방광의 악성신생물(암)(C67)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방광 의 이행상피세포층(transitional 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 포가 점막 고유층(lamina propri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비침습유두암 (papillary carcinoma) 상태로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 [AJCC(Ame 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Cancer Staging Manual] 제 8판"에서 정한 병기상 TaNOMO인 방광암을 말합니다.

[비침습방광암 예시] 이행상피세포층(transitional epithelium) ⓐ 고유층(lamina propria) 점막하층(submucosa) 근육층(muscle) 악성종양세포 침범깊이 ③ 악성종양세포가 점막 이행상피세포층을 침범한 경우

- ② 제1항의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이 향후 개정되는 경우에는 "비침습방 광암"의 진단확정 시점에 적용되는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을 따릅니 다.
- ③ "비침습방광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읍 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 하며, 이 경우 "비침습방광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비침습방광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 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3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1조의6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 중 〈부표2-3〉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방광 암 제외)"에 해당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다만, 제2-1조의4("대장점막내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제2-1조의5("비 침습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비침습방광암"은 제외합니 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자리암

암(종)세포가 상피와 기저막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상피 내부, 즉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생물. 상피란 신체의 내부나 외부를 싸고 있 는 조직을 말함.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1조의7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부표2-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경계성종양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중간 단계, 즉 악성인지 양성인지 구분이 모호한 단계의 신생물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1조의8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방광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 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은 "수술"에서 제외됩니다.

- 1. 이 특약에 있어서 "관혈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하며, "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보상합니다.
- 2. 이 특약에 있어서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내시경수술", "카테터수

- 술", "신의료수술"을 말합니다.
- 가. "내시경수술"이라 함은 인체 내부를 특수의료기구를 이용한 영 상을 통하여 보면서 시행하는 직접 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 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제 외합니다.
- 나. "카테터수술"이라 함은 인체의 일부(주로 혈관)와 외부를 연결해 주는 도관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직접 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 다. "신의료수술"이라 함은 관혈수술 이외의 수술에 해당하며 보건 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 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 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해당 부위에 직접치료를 목적으 로 하는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 3. 제1호의 복강경하수술 및 흉강경하수술에는 "로봇보조수술"을 포함하며, "로봇보조수술"이라 함은 내시경 및 수술용 기구 등을 로봇 팔에 고정하고, 수술자가 조정장치를 작동하여 수술도구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9("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와 제2-1조의11("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는 제외합니다.

제2-1조의9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별첨1> 참조)한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방광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치료는 제외됩니다.

제2-1조의10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① 이 특약에 있어서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의약품 등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표적항암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19년 8월 기준 "표적항암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부표2-5>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2-1조의9("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별첨1> 참조)한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 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확인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제도·정책
 - 약제기준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항암화학요법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 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 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1조의11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 법을 말합니다.

제2-1조의12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라 함은 제2-1조의11("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국내에 허가된 양성자치료센터에서 피보험자의 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소 원자 핵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된 양성자를 이용하여 암 환자의 몸에 조사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양성자는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부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특성(브래그 피크)을 가지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1조의13 "암치료" 및 "암치료포인트"의 정의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치료"는 각 보장계약별 제2-2조(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른 하기 표에 있는 비관혈수술, 관혈수술, 항암약물치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암치료포인트"는 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방광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래의 "치료그룹"에 속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점수를 말합니다. 이때, "치료그룹"은 암수술치료군, 항암약물치료군, 항암방사선치료군으로 정의합니다.

점수	치료그룹		
(치료구분)	암수술치료군	항암약물치료군	항암방사선치료군
1점(기본치료)	비관혈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2점(고급치료)	관혈수술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 ③ 각 보장계약별 보험금 지급 여부는 "암치료"를 받을 때마다 합산하여 "누적된 암치료포인트"를 따릅니다. 다만, 암치료포인트는 최대 5점으로 합니다.
- ④ "암치료포인트"는 진단 확정된 암 종류에 상관없이 각 "치료그룹"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부여합니다.
- ⑤ 동일한 "치료그룹"에 속하는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았을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치료 1회만 적용됩니다.
- ⑥ 동일한 "치료그룹" 내에서, "2점"을 부여받고 이후 "1점"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더라도 점수는 추가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한 "치료그룹" 내에서, "1점"을 부여받고 이후 "2점"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

우. "2점"에 해당하는 점수만 적용됩니다.

"암치료포인트" 산정 예시

- 1.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2점)를 받은 경우 → 총 "2점" 산정
-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는 항암약물치료에도 해당되나, 항암약물치료 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는 같은 치료그룹(항암약물치료군)에 속하 므로, 가장 큰 "2점"만 적용합니다.
- 2. 관혈수술(2점)을 받고, 다른 비관혈수술(1점)을 받은 경우→ 총 "2점" 산정
- ※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은 같은 치료그룹(암수술치료군)에 속하므로, 가장 큰 "2점"만 적용합니다.
- 3. 항암방사선치료(1점)을 받고,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2점)을 받은 경우 → 총 "2점" 산정
- ※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는 같은 치료그룹(항암방사 선치료군)에 속하므로, 가장 큰 "2점"만 적용합니다.
- 4. 관혈수술(2점)을 받고, 항암약물치료(1점)을 받은 경우→ 총 "3점" 산정
- ※ 암수술치료군에서 발생한 2점과, 항암약물치료군에서 발생한 1점을 합산하여 "3점"이 적용됩니다.
- 5. 대장암 진단 확정 후 관혈수술(2점), 항암약물치료(1점)을 받고 기타피부암 진단 확정 후 관혈수술(2점), 항암약물치료(1점)을 받은 경우 → 총 "3점" 산정
- ※ 진단 확정된 암 종류에 상관없이 각 "치료그룹"을 기준으로 암수술치 료군 2점과 항암약물치료군 1점을 한 번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제2-1조의14 보장계약 등의 정의

이 특약은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장종류에 따라 "1점 이상 보장계약", "2점이상 보장계약", "3점이상 보장계약", "4점이상 보장 계약", "5점이상 보장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자는 각 보장계약을 동 시에 체결하여야 하며, 각 보장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 서에 따라 특정 비율조건에 맞게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각 보

장계약을 합하여 "특약"이라 합니다)

- 1. 1점이상 보장계약: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1점이상)암치료급여금을 보장받기 위한 계약
- 2. 2점이상 보장계약: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2점이상)암치료급여금을 보장받기 위한 계약
- 3. 3점이상 보장계약: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3점이상)암치료급여금을 보장받기 위한 계약
- 4. 4점이상 보장계약: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4점이상)암치료급여금을 보장받기 위한 계약
- 5. 5점이상 보장계약: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5점이상)암치료급여금을 보장받기 위한 계약
- ※ 각 보장계약별 보장내용, 유지, 감액 등이 다르므로 각 조항을 꼭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방광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특약보험기간 중 그 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방광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치료"를 받아 "누적된 암치료포인트"가 각 보장계약에 해당되는 점수 이상이 되었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각 보장계약별 암치료급여금(<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1점이상 보장계약]: (1점이상)암치료급여금
- 2. [2점이상 보장계약]: (2점이상)암치료급여금
- 3. [3점이상 보장계약]: (3점이상)암치료급여금
- 4. [4점이상 보장계약]: (4점이상)암치료급여금
- 5. [5점이상 보장계약]: (5점이상)암치료급여금

다만, 각 보장계약별 암치료급여금은 최초1회에 한하며, 보장계약별 암치료급여금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제2-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특약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가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에 의해 납입면제가 된 경우 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를 따르며, 이 특약이 해당 약관의 「보험료납입면제대상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보험료 납입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이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금 삭감지급 도해 보장계약별 암치료급여금 - 암 지급 특약보험가입금액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없음 50% ↑ (90일) ↑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최초 암보장개시일 계약일 - 대장점막내암, 비침습방광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50% 최초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계약일

④ 제2-1조의13("암치료" 및 "암치료포인트"의 정의)에서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의 경우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 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 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 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 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허가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